

이 보도자료는 배포 즉시 보도하여 주시고, 공개되는 범죄사실은 재판 중으로 확정된 사실이 아님을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원지방검찰청

전문공보관 황성연

전화 031-5182-4253 / 팩스 031-5182-4718

보도자료

2020. 8. 14.(금)

제 목

코로나 방역방해 관련 종교단체 수사결과

공소제기 후 공개의 요건 및 범위

- 피고인, 죄명, 공소사실 요지, 공소제기 일시, 공소제기 방식, 수사경위, 수사상황 등 (제11조 제1항)
- 형사사건공개심의위원회 의결을 거쳐 예외적 실명 공개(제12조 제1항 제1호)

- 수원지방검찰청은 종교단체 관련 코로나 방역방해 혐의 등을 수사한 결과, 지난 2월 종교단체 교인들을 중심으로 코로나 감염이 폭증하는 상황에서 교인명단, 예배자명단, 시설현황 등을 거짓으로 제출하고 종교단체 자금을 횡령한 혐의 등을 밝혀 총회장 및 핵심간부 등 19명(구속4명)을 기소하였음
- 종교단체 간부들은 ① 대구교회 교인 명단, ② 확진자가 발생한 교회의 예배 참석자 명단, ③ 중국교인의 국내 행적, ④ 전체 교인명단, ⑤ 전체 시설현황 등 각종 자료를 허위로 작성해 방역당국에 제출하거나, 종교단체의 서버에 저장된 교인들의 주민번호나 출결정보 등을 변경·삭제하는 등 관련 증거를 인멸한 사실이 확인되었음
- 그 과정에서 종교단체 총회장은 시설현황 중 일부 위장시설을 제출하지 말 것을 지시하고, 전체 교인명단 제출에 수차례 부정적 지시를 반복하는 등 거짓 자료 제출에 직접 관여한 사실도 확인되었음
- 아울러, 총회장의 개인 주거지 신축과정에서 52억 원의 종교단체 자금 임의 사용, 지파장들로부터 종교단체 자금을 상납 받은 사실 등을 적발하였고, 매년 종교단체 행사 진행과정에서 공용시설을 무단으로 사용한 사실 등을 확인하였음

1 피고인 및 공소사실 요지

[붙임 1] 주요 피고인 공소사실 요지 · 처분 결과

2 수사 경과

- '20. 2. 28. ~ 4. 1. 1~3차 고발사건 접수
- '20. 3. ~ 5. 관련자 조사 및 압수수색 등
- '20. 7. 1. 종교단체 핵심간부 3명 구속
- '20. 7. 27. 종교단체 간부 7명 기소(3명 구속)
- '20. 7. 28. 총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사전) 청구
- '20. 8. 1. 총회장 구속
- '20. 8. 14. 총회장 등 12명 기소(1명 구속)

3 주요 불법 유형

1] 코로나 방역방해

① 대구교회 교인명단 및 전체 교인명단 거짓 제출

- 대구교회 전체 교인명단을 작성·제출하는 과정에서, 총회총무가 대구교회 책임자에게 공무원 등 특수직군이거나 노출을 원하지 않는 교인들을 제외할 것을 지시함으로써 대구교인 132명이 명단에서 누락됨
- 전체 교인명단 제출 시에는, 명단 제외를 요청한 일부 교인을 누락하고, 교인 10만 명의 주민번호를 보유하고 있음에도 제출을 거부하면서 주민등록상 생년월일이 아닌 교인들이 임의로 기재한 생년월일 정보(51,664명)를 제공함으로써 역학조사 과정에서 교인들의 인적사항 특징을 어렵게 함

② 확진자가 방문한 예배 참석자 명단 거짓 제출

- 대구교회를 방문한 타교회 소속 예배 참석자 명단을 제출하면서 대구교회 예배에 참석한 교인 154명을 누락한 거짓 자료를 제출함
- 방역당국이 확진자가 방문한 과천교회 9층 예배자 명단을 요구하자, 참석자를 누락하는 등으로 허위 명단을 작성하고, 10층을 방문한 확진자를 9층 예배자 명단에 포함시키고 10층 예배자 명단을 제출하지 않음

③ 중국 우한교회 담임 등 중국교인들의 국내행적 은폐

- 방역당국으로부터 중국교인의 입국내역 등을 요청받고 중국 우한교회 담임 등 중국교인 7명의 국내교회 예배에 참석한 사실을 은폐한 채 국내 행적을 허위로 기재하여 방역당국에 제출하고, 예배 출결정보까지 조작함

④ 시설현황 허위 제출

- 방역당국으로부터 종교단체 시설현황을 요구받자, 관리하던 종교단체 시설 현황 자료에서 선교센터, 복음방, 숙소 등 시설 757곳을 삭제한 채 제출함
- 그 과정에서 총회장이 종교단체 간부에게 선교센터 등 위장시설의 누락을 직접 지시한 사실이 확인됨

⑤ 역학조사 및 행정조사 방해

- 2. 25.자 경기도 역학조사시 대구교회를 방문한 경기도 거주민 자료를 요구받았음에도, 경기도 거주민 합계 66명을 누락하고, 경기도에 거주하지 않는 교인 합계 38명을 포함시키는 방법으로 허위 명단을 작성, 제출함
- 3. 5.자 행정조사를 앞두고 방역당국이 교인들의 직업정보를 요청하자, 서버에서 최신 직업정보를 삭제하고 공무원 등 특수직군의 전체 직업정보를 삭제하는 등 역학조사를 방해함

⑥ 조직적 증거인멸

- 서버 전문가를 동원하여 총회 서버에 저장되어 있던 중국교인의 출결정보를 조작하고, 주민번호, 자금 사용처, 백업데이터 및 로그기록까지 삭제하는 등 조직적으로 증거인멸을 시도함

② 종교단체 내부비리

① 종교단체 등의 자금 횡령

- 총회장은, ① 지파장으로부터 교회자금 약 3억 원을 제공받아 개인적 사용하고, ② 유관단체 공금 약 2억 원을 개인적으로 사용하고, ③ 개인 주거지 신축 시 종교단체 자금 52억 원을 임의로 지출했다가 언론보도로 의혹이 제기되자 자신의 지분(1/2)을 종교단체에 대물변제하는 등 종교단체 자금을 횡령함

② 부산 교회건물 신축 관련 배임수재

- 부산 교회건물 신축 과정에서 전 지파장이 부동산 중개업체 등으로부터 각종 편의제공의 사례 명목으로 7억 9천만 원 가량의 금품을 수수함
- 앞서 부산 교회건물은 종교시설로는 건축심의를 통과하기 힘들 것으로 예상되자 기업체의 교육시설인 것처럼 속여 건축허가를 신청함으로써 공사에 착수할 수 있었던 것으로 확인됨

③ 공공시설 무단 점거

- 종교단체에서 매년 개최하는 대규모 행사시, 서울 올림픽공원 평화의 광장, 화성 종합경기타운, 안산 와 스타디움, 수원 월드컵경기장 등 공용시설을 승인받지 않은 상황임에도 다수의 교인들을 동원하여 무단으로 점거하거나 위장단체 명의를 빌려 대관 승인을 받는 등 불법으로 행사를 진행함
- 그 과정에서 총회장이 직접 행사 강행을 지시하는 등 불법행위에 관여한 사실이 확인됨

4 향후 계획

- 향후 수원지검은 공소유지에 만전을 기하고, 종교단체의 현금 횡령 등 잔여 사건에 대한 수사를 계속 진행할 예정임 ☐

[붙임 1] 주요 피고인 공소사실 요지 ▪ 처분 결과

순번	성명	공소사실 요지(죄명)	처분
1	이만희 (88세, 종교단체 총회장)	<p><방역방해></p> <p>▶ ① 2. 22. 위장시설 358곳 포함한 총 757곳 누락하여 시설현황 제출, ② 2. 25. 전체 교인명단 제출시 8명 누락, 24명 생년월일 조작, 10만 명의 주민번호 정보 제출 거부, 5만 명의 생년월일을 임의로 기재, ③ 4. 5. 경기도지사의 폐쇄 명령서가 부착된 시설 부지에 임의로 출입 [감염병법위반, 위계공무집행방해]</p> <p><종교단체 내부비리></p> <p>▶ ① '12. 5.~'15. 8. 교회자금인 지파 발행의 수표 3.19억을 개인 계좌로 입금한 후 사적 사용, ② '18. 1.~8. 유관단체 후원금 2.09억을 사적 사용, ③ '13. 1.~'14. 11. 개인 주거지 신축 비용으로 종교단체 자금 52억 지출 [특경법위반(횡령) 등]</p> <p><공용시설 무단 점거></p> <p>▶ '15. 9. 올림픽공원 대관승인이 불허되었음에도 강제 진입 후 무단 점거하고 대규모 행사 강행하는 등 그때부터 '19. 9.까지 4회에 걸쳐 다수의 교인 등을 동원하여 공용시설에 무단으로 진입하거나 위장단체 명의로 대관 승인을 받아 행사 진행 [업무방해, 건조물침입]</p>	구속기소 (20. 8. 14.)
2	A○○ (37세, 총회 총무)	▶ ① 2. 20. 대구교회 교인 132명 누락 제출, ② 2. 25. 전체 교인명단 제출시 8명 누락, 24명 생년월일 조작, 10만 명의 주민번호 정보 제출 거부, 5만 명의 생년월일을 임의로 기재, ③ 2. 24.~28. 3회에 걸쳐 과천교회 예배 참석자를 누락하거나 불참자를 포함시키고, 10층 확진자의 방문층을 9층으로 조작하여 10층 예배자 명단을 제출하지 않는 등 과천교회 예배자 명단 허위 제출, ④ 2. 22. 위장시설 등 757곳 누락하여 시설현황 제출 [감염병법위반, 위계공무집행방해]	구속기소 (20. 7. 27.)
3	B○○ (47세, 총회 행정서무)	▶ ① 2. 25. 전체 교인명단 제출 시 8명 누락, 24명 생년월일 조작, 10만 명의 주민번호 정보 제출 거부, 5만 명의 생년월일을 임의로 기재, ② 2. 24.~28. 3회에 걸쳐 과천교회 예배 참석자를 누락하거나 불참자를 포함시키고, 10층 확진자의 방문층을 9층으로 조작하여 10층 예배자 명단을 제출하지 않는 등 과천교회 예배자 명단 허위 제출, ③ 2. 25. 및 27. 2회에 걸쳐 경기도 역학조사 관련 대구교회 예배에 참석한 경기도민 허위 제출, ④ 2. 22. 위장시설 등 757곳 누락하여 시설현황 제출, ⑤ 2. 27. 중국 우한교회 담임의 국내교회 출결정보 조작 지시, ⑥ 3. 5. 역학조사 대비 최신 직업정보 및 공무원 등 특수직군 45명의 직업정보 삭제 [감염병법위반, 위계공무집행방해, 증거인멸교사]	구속기소 (20. 7. 27.)
4	C○○ (39세, 총회 내무부장)	▶ ① 2. 21.~26. 2회에 걸쳐 타지역 교인들의 대구교회 예배자 명단 허위 제출, ② 2. 24.~28. 3회에 걸쳐 과천교회 예배 참석자를 누락하거나 불참자를 포함시키고, 10층 확진자의 방문층을 9층으로 조작하여 10층 예배자 명단을 제출하지 않는 등 과천교회 예배자 명단 허위 제출 [감염병법위반, 위계공무집행방해]	구속기소 (20. 7. 27.)
5	D○○ (40세, 총회 정보통신 부장)	▶ ① 2. 27. 서버 백업데이터, 주민번호 정보 및 재정 데이터 사용자 정보 삭제 각 지시, ② 3. 5. 역학조사 대비 최신 직업정보 및 특수직군 45명의 직업정보 삭제하고, 역학조사시 백업데이터 불생성 경위에 관한 허위 진술 [감염병법위반, 위계공무집행방해, 증거인멸교사]	불구속기소 (20. 7. 27.)
6	E○○ (37세, 총회 해외선교 부장)	▶ ① 2. 21. 중국 우한교회 담임 등 중국교인 7명의 국내행적 허위 제출, ② 2. 27. 중국 우한교회 담임의 국내교회 출결정보 조작 지시 [감염병법위반, 위계공무집행방해, 증거인멸교사]	불구속기소 (20. 7. 27.)

7	FOO (33세, 총회 정보통신 팀장)	▶ ① 2. 27. 서버 백업데이터 삭제, ② 3. 5. 역학조사시 백업데이터 불생성 경위에 관한 허위 진술 [감염병법위반, 증거인멸]	불구속기소 ('20. 7. 27.)
8	G00 (44세, 戊지파 전산과장)	▶ ① 2. 27. 중국 우한교회 담임의 교회 출결정보 조작, 서버 주민번호 정보 및 재정데이터 사용처 정보 각 삭제, ② 3. 5. 역학조사 대비 최신 직업정보 및 특수 직군 45명의 직업정보 삭제하고, 백업데이터 불생성 경위에 관한 허위 진술 [감염병법위반, 위계공무집행방해, 증거인멸]	불구속기소 ('20. 7. 27.)
9	H00 (46세, 乙지파장)	▶ 2. 24.~25. 2회에 걸쳐 과천교회 예배 참석자를 누락하거나 불참자를 포함 시키고, 10층 확진자의 방문층을 9층으로 조작해 10층 예배자 명단을 제출하지 않는 등 과천교회 예배자 명단 허위 제출 [감염병법위반, 위계공무집행방해]	불구속기소 ('20. 8. 14.)
10	I00 (45세, 총회 재정부장)	▶ 2. 27. 서버 재정데이터 사용처 정보 삭제 지시 [증거인멸교사]	불구속기소 ('20. 8. 14.)
11	JO0 (50세, 己지파장)	▶ ① '17. 7. DMZ 평화문화광장에 세계평화선언문 비석을 무단으로 설치, ② '17. 8. 위장단체인 0000 명의로 허위의 시설 사용신청서를 제출해 행사 진행 [업무방해, 공유재산및물품관리법위반]	불구속기소 ('20. 8. 14.)
12	K00 (52세, 庚지부장)	▶ '19. 8. 위장단체인 △△△△ 명의로 허위의 시설 사용신고서를 제출해 사용 승인 득하고, 위 승인이 취소되자 '19. 9. 무단으로 시설을 점거해 행사 강행 [업무방해]	불구속기소 ('20. 8. 14.)
13	LO0 (43세, 乙지파 봉사교통 부장)	▶ '17. 12. 사단법인 □□□□ 명의로 허위의 시설 사용신청서를 제출하여 시설 사용승인 득함 [업무방해]	불구속기소 ('20. 8. 14.)
14	MO0 (50세, ㄱ社대표)	▶ ① '16. 8. 사실은 종교시설로 사용할 것임에도, 기업체의 교육시설을 신축하는 것처럼 허위로 건축허가 신청서를 작성, 제출하여 건축허가를 득함, ② '16. 10.~11. 부동산 중개업체로부터 부산교회 부지 매입 관련하여 부정한 청탁과 함께 3.6억 수수, ③ '17. 3.~'18. 8. 시공업체 관계자로부터 시공사 선정에 대한 사례 명목 등으로 12회에 걸쳐 4.3억 수수 [위계공무집행방해, 배임수재]	불구속기소 ('20. 8. 14.)
15	NO0 (61세, 부동산업자)	▶ '16. 10.~11. 부정한 청탁과 함께 3.6억 교부 [배임증재]	불구속기소 ('20. 8. 14.)
16	OO0 (52세, 시공사 대표)	▶ '17. 3.~'18. 8. 부정한 청탁과 함께 12회에 걸쳐 4.3억 제공 [배임증재]	불구속기소 ('20. 8. 14.)
17	PO0 (49세, 종교단체 교인)	▶ 4. 5. 경기도지사의 폐쇄명령서가 부착된 경기 가평군 청평면 소재 부지에 임의로 출입 [감염병법위반]	약식기소 ('20. 8. 14.)
18	QOO (44세, 총회장 비서)	▶ 4. 5. 경기도지사의 폐쇄명령서가 부착된 경기 가평군 청평면 소재 부지에 임의로 출입 [감염병법위반]	약식기소 ('20. 8. 14.)
19	RO0 (47세, 종교단체 교인)	▶ 4. 5. 경기도지사의 폐쇄명령서가 부착된 경기 가평군 청평면 소재 부지에 임의로 출입 [감염병법위반]	약식기소 ('20. 8. 14.)